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-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새로운 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대종 및 종각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,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·보존을 도모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종의 명칭 “충북천년대종”으로 함 (안 제2조)
- 종의 보존과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함 (안 제5조)
- 타종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6조)
 - 제야, 3·1절, 광복절 행사
 - 각종 기념일, 경축행사, 주요 민속일 등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조례의 제명에는 “충청북도 천년대종”으로 조례안 제2조 (명칭)에는 “충북천년대종”으로 사용명칭을 달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식명칭인 충청북도 천년대종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됨
- 조례안 제4조 제1호 종의 규격을 표시함에 있어 영문자 ‘m’을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 ‘미터’로 표기하고
- 조례안 제4조 제2호의 내용중 “21평”은 계량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과 공부상 등재된 면적에 따라 70.56제곱미터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